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여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.

발 의 자 : 여기구·윤준병·김병주
박희승·이개호·서삼석
박용갑·조인철·임호선
김태선·박수현·박균택
최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,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.

그러나 태풍, 집중호우,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.

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,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 12조).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가로수의 제거

2. 가로수의 가지치기

⑦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및 기간, 시행한 조치의 일시·대상·사유 등 공표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① (생략)	제12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(이하 “진단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<신설>	1. <u>가로수의 제거</u>
<신설>	2. <u>가로수의 가지치기</u>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⑦ <u>제2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</u>
	⑧ <u>제7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</u>

	<u>및 기간, 시행한 조치의 일시 ·</u> <u>대상 · 사유 등 공표할 내용 등</u> <u>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</u> <u>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
--	--